
입 법 정 보

2017-21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5
2.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5
3.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6
4.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7
5.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7
6.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8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8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8
9.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9
10.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9
11.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
1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
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
15.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
16.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
1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3
18.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부)	13
19.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통신부)	13
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4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5
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6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7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8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9
2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
27.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1
28.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교육부)	21
2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2
3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4
31.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5
32.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5
3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6
3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26
35.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7
36.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7
37.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8
3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29
3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29
40.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0
4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0
42.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30
4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1
44.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1
4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1
4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32
47.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32
48.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3
49.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	34
50.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4
5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조정실)	34
5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
5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36
5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6
5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37
5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37
57.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37
5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8
5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8
60.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39
6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9
6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39
63.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40
6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41
6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41

1.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 예고일자 : 2017. 10. 23. • 마감일자 : 2017. 12. 4.
- 2016. 12. 20. 개정된 해외이주법 제3조(해외이주의 제한) ② 및 ③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병역복무 또는 의무복무 대상자의 해외이주 결격사유를 규정.
거주여권 폐지 이후 현지이주자들의 해외이주신고 방안 마련.
- 가. 해외이주법 시행령에 해외이주 결격사유 대상 병역의무자 등 규정
 - 1) 기존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2조의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2조에 신설.
 - 2) 병무제도의 변화 반영을 위해 병무청 협의 후 내용 수정.
- 나. 거주여권 폐지 이후 현지이주자들의 해외이주 신고방안 마련
 - 1) 기존 현지이주자의 해외이주 신고는 거주여권 사본 제출로 같음.
 - 2) 거주여권 폐지 이후 현지이주자의 해외이주신고 방안 마련 필요. 해외이주법 제6조(해외이주신고)에 따라 동 시행령 제5조①의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 이주의 신고”를 “해외이주의 신고”로 개정.
 - 3) 제5조①에 현지이주자의 해외이주 신고 편의를 위해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해외이주신고접수 권한 부여 규정 신설.

2.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10. 23. • 마감일자 : 2017. 12. 4.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변호사시험법 성적 비공개 규정(제18조 제1항 본문)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합격자의 성적을 공개하고 있으나, 합격자 성적 공개에 관하여 입법공백 상태이므로 변호사시험법에 성적공개의 명백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 있음
아울러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석사학위취득 예정자 신분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이행기간을 응시기간에서 공제하는 근거규정이 없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제규정을 마련할 필요 있음

또한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에 대한 응시결격사유를 개정하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 자격을 법무부 직제 변경에 맞추어 일부 수정하는 등 시험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10. 23. ● 마감일자 : 2017. 12. 4.
- 2017년 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를 재검토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제1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 가. 인증기관 등 공고기간 설정(안 제26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60조제1항)
인증기관 등 지정 신청 공고 시 일정기간 이상 공고하여 대국민 널리 알 수 있도록 공고기간을 설정함
 - 나. 공시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62조제1항제2호 삭제)
공시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 시 변경 사유서 제출을 생략하여 공시기관의 행정편의 확보하고자 함
 - 다.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8)
인증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적용 기준 명확화
- 제2조「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 가. 신설 조합의 업무 개시 보고 방법 개선(안 제4조 변경)
신설 조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업무 개시 보고를 하는 경우에 전자적 방법으로도 보고 할 수 있도록 함
 - 나. 법인인 조합원의 조합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개선(안 제5조제2항 변경)

법인인 조합원의 조합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중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대표자의 생년월일로 변경

4.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10. 23. • 마감일자 : 2017. 12. 4.
- 육군종합군수학교의 대외교육 교류대상(민간인)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부대령 일부 개정임
- 가. 교육대상 확대를 위한 조항 변경(안 제6조, 안제6조2)
- 나. 교육대상에 대한 수업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7조)

5.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7. 10. 24. • 마감일자 : 2017. 12. 4.
- 부정행위로 인해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 수험생이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부 경력경쟁채용에서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만으로 채용이 가능해 응시자의 능력검증에 미흡할 소지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경력경쟁채용시험 방법 개선(안 제29조제1항, 제1의3호 신설, 제2항 신설)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할 경우 반드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도록 함
- 나. 5년간 공무원 시험 자격정지 부정행위자 통합관리(안 제51조제4항, 제7항 신설)
 - 1)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소관 시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가 발생 할 경우 처분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함
 - 2) 안 제51조제4항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로부터 수집 처리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공 가능함
- 다. 기타 미비점 보완(안 제31조의2, 제53조제1항 삭제)
 -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15.12.22.)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2) 응시의사 철회기간 및 부정행위 조치 관련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

6.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10. 24. • 마감일자 : 2017. 12. 4.
- 최근의 국내 에너지원의 수급여건, 특성 등이 반영된 에너지원별 열량 환산기준 개정 필요
- 가. 에너지열량환산기준 재산정(별표)
총 30종(석유류 17종, 석탄류 7종, 가스류 3종, 기타 3종)의 에너지원에 대해 5개년('11~' 15) 동안의 발열량 측정·분석값을 근거로 에너지열량 재산정
정책변경, 이론값 대신 실제값 등을 반영해 발열량 수치 및 명칭 표기
- 도시가스 LNG : 표준열량제 → 열량범위제(' 12.7)
- 프로판, 부탄 : 프로판, 부탄의 이론 발열량에서 실제 생산제품(LPG1호, LPG3호) 발열량 측정·표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0. 24. • 마감일자 : 2017. 12. 4.
-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방법 등과 관련하여 현행 신청 및 결과 통보 절차 외에 법 제18조의4 제4항에서 위임한 자산형성지원의 방법 등을 상세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방법 등(안 제32조의4)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지원금의 적립, 지급, 사전 예탁 등의 방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0. 24. • 마감일자 : 2017. 12. 4.
-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 개별가구의 소득평

가액에서 제외하여 국가적 예우와 생계안정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안 제5조의2제6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빼도록 함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42조제2항제7호 신설)

중앙자활센터에서 자활급여 중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탁 수행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9. 검찰입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인)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10. 24. • 마감일자 : 2017. 12. 4.

- 타법 개정(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문 내 명칭 변경 필요
- 제54조(환부의 공고)의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안 제54조 제2항 개정)

10.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인)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10. 24. • 마감일자 : 2017. 12. 4.

- 뇌물죄 적용 등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대상을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53조의2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신설, ’16.3.)됨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범죄에 대한 수사개시·종료 통보 및 관련 서식 개정 필요
- 국내 거주 외국인이 검찰사건사무 관련 민원신청을 할 때 민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가 기재된 서식 추가 필요
- 불기소이유 통지서’ 서식에 ‘고발인’ 표시가 없어 개정 필요

11.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10. 24. • 마감일자 : 2017. 10. 31.
- 검찰청에서 생산한 기록 중 보존기간 영구(준영구)·30년 이상 중요 사건기록 및 재판서를 ' 18.1. 개관 예정인 대검찰청(특수기록관)에서 통합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필요
- 국내 거주 외국인이 검찰보존업무 관련 민원신청을 할 때 민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가 기재된 서식 추가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10. 25. • 마감일자 : 2017. 12. 4.
- 지방분권 시대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유재산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임.
- 가. 기부채납 재산의 전대허용 확대(안 제5조)
 - 기부자가 기부시점에서 전대차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전대를 허용하던 것을 무상사용 기간 중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가 가능하도록 개선
- 나. 시·도 위임재산의 귀속금 지급 규정 개선(안 제10조)
 - 광역지자체 재산을 위임받은 기초지자체가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대부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는 귀속금 지급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다.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운영요령을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안 제13조)
 - 푸드트럭 영업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 라. 농경지에 대한 수의계약 사용·대부 근거 명확화(안 제13조, 제29)
 - 농경지인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대부함에 있어 '실 경작자'의 범위와 '일단의 면적'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
- 마. 국가 및 다른 지자체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기간 설정(안 제17조, 제35조)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대부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고 면제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국·공유재산간 형평성 제고

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입찰참가자격 명확화(안 제19조)

행정재산 관리위탁시 2인 이상을 입찰의 성립조건이 일반입찰, 지명입찰, 제한입찰 모두 해당됨에도 제한입찰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함
사. 지명경쟁 매각 사유의 명확화(안 제37조)

지명경쟁 사유를 공공목적 용도지정 매각으로 명확히 하고, 수의계약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를 추가 규정함

아. 소규모 수의매각 기준 조정(안 제38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재산의 수의매각 기준을 예정가격 3천만원에서 제31조제2항에 따른 재산가격 3천만원으로 조정 완화함

자. 공유지분권 자에 대한 수의매각 관련 조항 명확화(안 제38조)

「공유재산운영기준」에서 공유지분권자에 대한 수의매각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 위임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함

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특례규정 삭제(안 제9조, 제38조)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공유재산 특례규정이 대폭 정비되면서 「공유재산법」과 중복 상이한 내용 등 관련 규정 삭제

카. 불용품 매각방법 명확화 및 감정비용 절감(안 제78조)

불용품 매각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토록 하고, 소액 물품의 경우 감정평가 생략 및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경매도 가능토록 함

타. 불용품 낙찰제도 개선(안 제78조)

일반입찰로 불용품 매각 시 유효한 입찰성립 조건을 1개 이상으로 규정함

1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10. 25. • 마감일자 : 2017. 12. 4.

○ 엔지니어링산업 내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위한 기술인력 보유요건을 현행 엔지니어링기술자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고자 함.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위한 인력 요건 완화

1) 부적격사업자의 난립 방지를 위해, 현행 법령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요건으로 엔지니어링기술자 5명 이상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요건은 소상공인·청년 등의 창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2) 이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위한 인력 요건을 엔지니어링기술자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여, 엔지니어링산업 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0. 25. • 마감일자 : 2017. 11. 14.
- 저소득층의 가계 과부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급성기 병원(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 및 요양병원 적정입원 환자(120일 이하 입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하고자 함
-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를 제외한 건강보험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 (안 부칙 제2조)

15.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0. 25. • 마감일자 : 2017. 12. 5.
- 공동주택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관리자의 관리업무 수행 항목에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보강공사에 적용된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결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시공의 안정성을 높이하고자 함

16.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0. 25. • 마감일자 : 2017. 12. 5.
- 공동주택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하여 구조설계에 신기술·신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정확한 검증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기간을 20일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1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0. 25. • 마감일자 : 2017. 12. 4.
- 환경관리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한 근거가 되는 사용계획서의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과 ‘관리’ 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통합하고자 함.
- 가.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 제출시기를 구체화(안 제61조제2항)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 나.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과 ‘관리’ 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통합하여 고시(안 제61조제3항)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함.

18.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부)

- 예고일자 : 2017. 10. 25. • 마감일자 : 2017. 12. 4.
- 가. ‘그린인터넷인증’ 제도는 민간 정보통신제공사업자*의 자발적인 인터넷 중독예방 및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강제성이 없는 법정임의 인증제도로써, 2년간(’ 14~15년) 인증실적이 총 6건임
- * 대상사업자 : 게임, 모바일, 콘텐츠서비스 제공사업자 등
- 나. 법정 인증 제도로써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낮은 그린인터넷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개정함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그린인터넷인증제도에 관한 조항 삭제(제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19.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통신부)

- 예고일자 : 2017. 10. 25. • 마감일자 : 2017. 12. 4.

- 가. ‘그린인터넷인증’ 제도는 민간 정보통신제공사업자*의 자발적인 인터넷 중독예방 및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강제성이 없는 법정 임의 인증제도로써, 2년간(’ 14~15년) 인증실적이 총 6건임

* 대상사업자 : 게임, 모바일, 콘텐츠서비스 제공사업자 등

- 나. 법정 인증 제도로서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낮은 그린인터넷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개정함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10. 25. • 마감일자 : 2017. 12. 4.

- 개정 보험료징수법에서 위임된 ‘통상적 경로 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의 산재보험료를 결정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에 의거, ‘통상적 경로 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1인 자영업자 특례적용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중 소기업 사업주의 연도별 기준보수액 등급 선택 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위해 신청 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임.

- 가. 통상적 경로 방법의 출퇴근 중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를 결정 근거 규정(안 제12조, 제12조의2 신설, 별표 1, 별표 2 신설)

일반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 종류별 위험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요율에 차등을 두지만, ‘통상적 경로 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는 그 위험도가 사업의 종류와 무관하므로, 관련 산재보험료율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업종에 동일한 수준을 적용함.

- 나. 출퇴근 재해 적용제외 직종 규정 및 1인 자영업자 특례적용 업종 확대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56호의2서식)

- 다. 중 소기업 사업주 기준보수액 등급 변경신청 시기 조정(안 제44조)

매년 말일 경 확정되는 다음 보험연도 기준보수액 등급이 등급 신고 기한일과 중첩되어, 확정안 이전 행정예고안을 기준으로 사업주들이 등급 신고를 해야 함으로 인해, 확정안과 행정예고안이 차이가 있는

경우, 혼란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신고 기한일을 다음 연도 1월 말 일로 조정함.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10. 25.
- 마감일자 : 2017. 12. 4.

○ 가. 요양급여 신청시 보험가입자의 확인제도 폐지(안 제20조)

산재 노동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재해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

나. 중 소기업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기준 개선(안 제76조 제2항 신설 및 제78조제2항 신설)

중 소기업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재요양시에 업무상 재해를 입을 당시와 달리 사업주가 아니거나 다른 직종에 종사할 경우, 현행 제도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토록 개편함.

다. 이송의 범위 확대(안 제15조제5호 신설)

근복공단 요구로 자문의사회의 심의 등에 참석한 산재 노동자에게도 이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송의 범위를 확대함.

라.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제조업 분류 특례 개편(안 제4조 삭제)

제조업체가 생산제품에 대한 설치공사까지 시행하는 경우, 해당 설치공사는 건설업이 아니라 제조업으로 분류토록 특례규정을 운영 중이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가 다수임에도, 다른 공사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이 미적용됨으로 인해, 원청업체와 제조업 하청업체 간 분쟁 및 산재은폐가 발생해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도 제조업으로 분류토록 명확화함.

마. 기금관리요원 사용근거 명확화(안 제69조)

‘기금관리 보조요원’의 명칭을 ‘기금관리요원’으로 변경하고, 임명주체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명확화 함

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10. 25. • 마감일자 : 2017. 12. 4.

○ 개별실적요율제의 최대 할인 할증폭이 사업장 규모에 비례하도록 차등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 대기업에 보험료 할인혜택이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 및 영세 사업주로 하여금 보험료 할증을 우려하여 산재사고를 은폐토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 차등을 폐지하고 최대 할인 할증폭을 축소하여 대-중소기업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사업장의 최소규모 기준을 상향하여 영세사업장의 산재은폐 요인을 방지하는 한편, 사업주가 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에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50% 또는 10%를 징수하는 현행 제도로 인해 영세사업장의 경우,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산재사고를 은폐하거나 심지어 폐업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5배로 징수액의 상한을 두어 과도한 징벌을 지양하고 산재은폐를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사업장 범위 및 사업장 규모별 최대 할인 할증폭 조정(안 제15조제1항, 별표 1)

1) 개별실적요율제의 적용 사업장 범위를 기존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으로 조정함.

2) 개별실적요율제의 최대 할인 할증 폭을 기존 사업장 규모에 비례하여 20%부터 50%까지 차등하던 것에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일괄 20%로 적용함.

나. 보험급여 징수액 상한 신설(안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사업주가 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에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 징수 상한액을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로 제한함.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10. 25.
- 마감일자 : 2017. 12. 4.

- 재해자가 산재요양급여 신청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첨부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재해 노동자의 산재신청에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 소기업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재요양시 평균 임금 산정 기준을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개선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재해자에게 이송비가 지급되는 이송범위를 확대하며, 제조업 생산 제품 설치공사 특례를 개편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요양급여 신청시 보험가입자의 확인제도 폐지(안 제20조)

산재 노동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재해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

- 나. 중 소기업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기준 개선(안 제76조 제2항 신설 및 제78조제2항 신설)

중 소기업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재요양시에 업무상 재해를 입을 당시와 달리 사업주가 아니거나 다른 직종에 종사할 경우, 현행 제도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토록 개편함.

- 다. 이송의 범위 확대(안 제15조제5호 신설)

근복공단 요구로 자문의사회의 심의 등에 참석한 산재 노동자에게도 이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송의 범위를 확대함.

- 라.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제조업 분류 특례 개편(안 제4조 삭제)

제조업체가 생산제품에 대한 설치공사까지 시행하는 경우, 해당 설치공사는 건설업이 아니라 제조업으로 분류토록 특례규정을 운영 중이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가 다수임에도, 다른 공사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이 미적용됨으로 인해, 원청업체와 제조업 하청업체 간 분쟁 및 산재은폐가 발생해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도 제조업으로 분류토록 명확화함.

마. 기금관리요원 사용근거 명확화(안 제69조

‘기금관리 보조요원’의 명칭을 ‘기금관리요원’으로 변경하고, 임명 주체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명확화함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10. 25. ● 마감일자 : 2017. 12. 4.

○ 개별실적요율제의 최대 할인 할증폭이 사업장 규모에 비례하도록 차등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 대기기업에 보험료 할인혜택이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 및 영세 사업주로 하여금 보험료 할증을 우려하여 산재사고를 은폐토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 차등을 폐지하고 최대 할인 할증폭을 축소하여 대-중소기업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사업장의 최소규모 기준을 상향하여 영세사업장의 산재은폐 요인을 방지하는 한편, 사업주가 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에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50% 또는 10%를 징수하는 현행 제도로 인해 영세사업장의 경우,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산재사고를 은폐하거나 심지어 폐업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5배로 징수액의 상한을 두어 과도한 징벌을 지양하고 산재은폐를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사업장 범위 및 사업장 규모별 최대 할인 할증폭 조정(안 제15조제1항, 별표 1)

1) 개별실적요율제의 적용 사업장 범위를 기존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으로 조정함.

2) 개별실적요율제의 최대 할인 할증 폭을 기존 사업장 규모에 비례하여 20%부터 50%까지 차등하던 것에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일괄 20%로 적용함.

나. 보험급여 징수액 상한 신설(안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사업주가 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에 발생

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 징수 상한액을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로 제한함.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10. 25. • 마감일자 : 2017. 12. 4.

- 개정 산재보험법에서 위임된 ‘통상적 경로 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를 포함하는 출퇴근 중 재해의 범위’, ‘출퇴근 경로 이탈 중단의 예외범위’, ‘출퇴근 재해 적용제외 직종’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영세 사업장 보호 확대를 위해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및 ‘상시근로자 수 1인 미만 사업’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산재보험 적용제외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산재보험 특례적용 업종을 확대하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개선해 재해자가 부담하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완화시키고, 기타 현행 보상 과정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통상적 경로 방법의 출퇴근 중 재해 인정기준(안 제29조, 제34조의 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안 제123조)

1) 기존 산재보험 적용범위인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중 재해’ 외에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추가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통상적 경로 방법의 출퇴근 중 재해’를 포함하는 출퇴근 중 재해의 범위를 규정함.

2) 출퇴근 경로 이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그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고, 그 행위의 범위를 규정함.

3) 개인택시 등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의 경우, 제도의 혜택은 받기 어렵고 보험료만 부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출퇴근 재해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을 제외토록 함.

나.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2조의2제

1항 및 제3항 및 제4항, 제122조제1항제2호사목 및 아목 신설)

1) 현행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공사 또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대수선공사’ 및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을 적용제외 대상에서 삭제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함.

2) 1인 자영업자 특례가입 업종에 재해빈도 및 산재보험 가입수요가 높은 ‘금속가공제조업’ 등 제조업 분야 8개 업종을 추가함.

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확대(안 별표 3 제13호)

직업경력, 유해물질 노출수준 등 업무상 질병의 당연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도록 함.

라. 기타 현행 보상 과정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 및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의 장에 위임되는 이사장의 대표 권한 범위 정비(안 제24조제2항, 제58조제3항제1호, 제76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1 제10호부터 제10호의3까지 신설, 제19호부터 제23호, 제28호의2부터 제28호의4까지 신설, 별표 11의2 제3호)

2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0. 26. • 마감일자 : 2017. 11. 15.

○ 어린이집에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실에 교사실을 추가하고 어린이집 1~3층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 가. 보육정원이 21인 이상인 어린이집은 교사가 교육활동을 계획·준비하고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교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활동 준비와 행정 사무, 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안 별표1 제3호 가목 마) 신설)

나. 어린이집의 1~3층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안 별표1 제3호 가목 사) 개정)

27.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0. 26. • 마감일자 : 2017. 12. 5.
-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내수활성화 방안('17.2, 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운영실적이 미흡한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부 열람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
-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부의 열람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28.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10. 26. • 마감일자 : 2017. 12. 6.
-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17호, 2015. 3.13. 공포 시행)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 제64호 2015. 6.11 공포 시행) 시행 이후 국립대학 대학회계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회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국립대학이 성과와 연계된 사업별 예산을 도입 시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보완하고 회계처리 기준 및 세부 절차를 새로 마련하며, 전체 조문을 다시 배열하여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 가. 대학회계 사업별 예산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 1)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사업별 성질별로 구분하되 사업별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성질별은 목 세목으로 구분하고 각 사업별 내용을 설정함(제28조 제2항~제3항 및 별표 5, 별표 6)
- 나. 대학회계 회계처리 기준 및 세부 절차 보완 및 신설
 - 1) 본부, 제1관서, 제2관서, 명령기관, 출납기관, 총괄직, 분임직, 지정정보처리장치, 전자서명, 전자서식, 수입대체경비 등 회계처리에 있어 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임명 및 관직 지정 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6조 및 별표1, 별표2)
 - 2) 예산편성기본지침 작성기한, 예산의 내용, 예산안 첨부 서류, 세입 세출예산 편제와 관련 서식 및 의결예산의 보고 등 예산편성에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고 신설함(안 제21조~제33조 및 별표3)

3) 예산 (재)배정, 이용전용 및 집행의 제한, 예비비의 사용 등 예산집행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함(안 제34조~제48조)

4) 결산서의 구성,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 결산서 첨부 서류 및 결산서의 재정위원회 제출기한 등 대학회계 결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보완하고 신설함(안 제49~제55조)

5) 세입 징수결정 취소 결정, 납입고지, 수납, 독촉, 불납결손처분 및 징수보고서의 작성 등 수입처리 관련 절차 및 처리기준을 보완하고 신설함(안 제56조~제78조)

6)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반환절차, 이자귀속 등 세입세출외현금 회계처리 관련 절차 및 기준을 신설함(안 제100조~제110조)

7) 대학회계소관 자금(현금, 유가증권 등)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업무 처리를 위한 조항 신설함(안 제120조~제130조)

8)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회계 처리 계산증명(計算證明)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2조~제142조)

2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10. 27. • 마감일자 : 2017. 12. 6.

○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화재 등의 사고방지를 위한 유해성 정보 자료 작성·제공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83호, 2017.4.18. 공포, 2018.4.19.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대상,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의 부적정처리 사례가 발생하여 이의 관리를 강화하고, 유해성이 적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신고만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폐기물의 에너지 회수기준 개선·보완

1) 소각열에너지 회수기준 중 소각열 이용의 인정범위를 열원에서 열원·전기생산 등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회수·이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규정 마련(안 제3조)

2) 회수된 소각열에너지의 이용률을 계량할 수 있도록 소각열회수시설 설치·관리기준 개선(안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나.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관리 강화

- 1) 유해물질 함유가 우려되는 도자기 조각·광재는 예외적 매립시설 매립처분 대상에서 제외(안 제13조)
- 2) 폐황산이 포함된 폐배터리의 발생·처리현황을 파악하여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된 폐기물 세부분류 코드를 신설하고, 재활용 가능 유형을 명시(안 별표 4, 별표 4의3)
-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준수사항에 사업자가 의뢰한 폐기물 분석 결과를 관할 행정기관에 공유하도록 의무 신설(안 별표 5의7)

다.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 1) 생활폐기물인 커피찌꺼기 및 동·식물성 잔재물을 지자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 외 폐기물 처리 신고자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운반 신고 대상 품목에도 추가(안 제15조의 2, 제66조제6항)
- 2)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수집·운반·재활용(선별·압축·감용·절단)할 수 있는 품목에 폐전선과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커피박, 동·식물성 잔재물을 추가(제66조제3항)

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개선

- 1) 골목길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1톤 이하 차량 기준 등 수집·운반 기준을 완화하고, 포장 덮개 차량으로 운반 가능한 품목을 폐기물 처리 신고대상 폐기물까지 확대(안 별표 5)
- 2) 지자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지자체 소유 차량을 임차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 5, 별표 7)

마. 매립시설 관리기준 정비

- 1)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매립시설의 굴착기준을 마련하고, 사용 중인 매립시설 유효부지 내 수상 태양광발전시설 입지허용(안 별표 11)
- 2)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예외적 매립시설에 빗물 유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일일복토 및 중간복토는 양질의 흙으로 복토하도록 기준을 마련(안 별표 11)

3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10. 27.
- 마감일자 : 2017. 12. 6.

-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화재 등의 사고방지를 위해 폐기물 유해 정보 작성·제공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83호, 2017. 4. 18. 공포, 2018. 4. 19. 시행)됨에 따라 유해 정보 작성·제공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확대(안 제8조)
 - 1) 생활폐기물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시행규칙 별표 5)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 함
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명칭 변경 및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의 한시적 규제유예 기간 연장(안 별표 3)
 - 1) 폐기물재활용시설 중 시설의 특성과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재활용시설 중 ‘소멸화시설’을 ‘부속시설’로 명칭을 개정하고,
 - 2) 부속시설(현행 소멸화시설)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 규모의 한시적 완화 적용기간을 2년 연장(당초: 2017년 6월 30일, 개정: 2019년 6월 30일)
- 다. 기타 제도 개선(안 별표 3, 별표 4의3 및 별표 8)
 - 1) 폐기물처리시설의 동력 단위를 ‘마력’에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킬로와트(kW)’로 변경(1마력= 0.746kW로 환산)
 - 2) 시험·연구목적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제한·금지 대상 적용에 예외 인정
 - 3)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공 등 신설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마련

31.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10. 27.
- 마감일자 : 2017. 11. 3.

-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의 회수의무 등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이외에는 제약, 약품 등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사법」 개정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여 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량권의 합리적인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 「약사법」 제85조 특례에 따라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6조)
 - 1)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가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개정, 2017. 3. 30. 시행)됨
 - 2)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약사법」 제85조에 의해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안 별표 3)
 - 1) 위해의약품의 회수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고 폐업 등을 하는 경우(법 제40조제2항, 법 제98조 제1항제5호의2)
 - 2)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이외의 자가 제약, 약품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법 제87조의2, 법 제98조제1항제11호)

32.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0. 27. • 마감일자 : 2017. 11. 6.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별지 제4호에서 제7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을 시장·도지사로 변경한다.

3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0. 27. • 마감일자 : 2017. 12. 8.
- 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 불필요 명확화(안 제15조제1항)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 마련(안 제75조제2항)
제1차 시험은 현행대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 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해당 연도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 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이관에 따른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0조)
시험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정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을 공단 이사장에게 부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10. 27. • 마감일자 : 2017. 12. 6.
- 가.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 등을

-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패신고 사실확인 기능을 보완
- 나. 국가인권위원회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을 이 법을 적용하는 공공기관에 포함함으로써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
- 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단체를 국민감사청구 대상에 포함하고 위원회의 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에 기여
- 라.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부패방지 업무수행의 실효성 제고
- 마.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위원회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자 고발의 법적 근거 강화

35.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10. 27. ● 마감일자 : 2017. 12. 6.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인에 대한 정보 확인을 위해 전체 세대원의 주민번호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서식의 용도별 지질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36.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10. 27. ● 마감일자 : 2017. 12. 6.
- 4대 사회보험 공통 신고서식의 용어통일(띠어쓰기), 타 사회보험 신고서식 변경내용 반영 등 서식정비를 하기 위함

37.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10. 27.
- 마감일자 : 2017. 12. 6.

○ 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 신설(안 제17조)

신중년(5060)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 고용유지가 가능한 양질의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설하기 위한 것임

나. 고용유지지원금 중 훈련지원금 폐지(안 제19조, 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 중 훈련비 지원은 직업능력개발 유급휴가 훈련비 지원 사업과 유사하여 신청이 저조하고 사업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의 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설정 및 유효기간 연장(안 제25조의2 및 부칙 제2조제2항)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상 비용 부담 완화,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고령자고용지원금 폐지시기를 3년간 연장하고 일자리 안정자금과의 중복지원 배제를 위하여 지원대상은 3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하고자 함

라.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근거 보완(안 제33조제1항)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1,000인 미만 사업장은 전액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 중으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원근거를 전부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마.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안 제68조)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90%)도 월 54,216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실직 중 생계지원이라는 보험의 취지, 임금 상승률 및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한액을 인상하려는 것임

3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기증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10. 30. • 마감일자 : 2017. 12. 11.
- 환경범죄 신고 시 포상금 지급주체가 지자체로 국한되어 있어 포상금 지급 주체를 지자체장에서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확대하고,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이라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 환경감시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배양한 경우,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임명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환경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주체에 ‘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 을 추가(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 나. 개정된 직제 규정 반영(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개정)
- 다. 환경감시관 임명기준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자’ 를 추가(시행령 제11조제2항 단서 신설)

3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10. 30. • 마감일자 : 2017. 12. 11.
- 정보의 전자파일화 추세에 따라 국민 알권리 강화 및 행정비용 감소를 위해 전자파일의 무료공개 범위 확대
- 가. “전자파일 수수료의 무료범위 확대” 등
 - 1) 현행 전자파일의 복제에 대한 수수료 기준이 복잡하여 국민입장에서 이해가 어렵고, 수수료 징수를 위해 행정력도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음.
 - 2) 1MB 이내 무료,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공개 시 무료로 하도록 함
 - 3) 수수료 체계가 단순화되고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전자파일의 정보공개가 증가되고 국민 알권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40.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0. 30. • 마감일자 : 2017. 12. 11.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국가건강검진 후 신속한 치료 및 건강관리 연계를 위해 확진검사 및 검진결과 상담을 자신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1호아목 및 같은 표 제2호러목 신설)
종전에는 국가건강검진(1차 검사) 후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검진기관을 재방문하여 확진검사를 받아왔으며, 확진검사 비용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확진검사에 대해 검진기관 이외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검사비용총액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4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0. 30. • 마감일자 : 2017. 11. 20.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하려는 것임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상한액 인하(안 제13조제6항제2호)
종전에는 2종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6개월간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으로 함.

42.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10. 30. • 마감일자 : 2017. 11. 6.
- 현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과장급 직위 90개 중, 25개 직위에만 행정·전산·방송통신 또는 의료기술 직렬을 과장으로 보할 수 있는

데, 복수직렬 과장을 38개로 확대하고자 함

4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10. 31. • 마감일자 : 2017. 12. 11.
-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배출 기여도가 높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소 및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석탄화력발전소 및 대량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안 별표8)”
 - 1) 미세먼지 배출기여도가 높은 설비용량 100MW 이상 고체연료 사용 발전소 등에 대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

44.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10. 31. • 마감일자 : 2017. 12. 11.
-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의무화하도록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919호, 2017. 2. 28.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환경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주기, 측정결과 보존기간 및 측정대행자격 규정 마련(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는 2년 주기로 측정하고 측정결과는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등록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

4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10. 31. • 마감일자 : 2017. 12. 11.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량을 관리하던 기존 6종의 건축자재 외에 환경 부령으로 목질판상제품을 정하여 적용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건축자

재 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4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10. 31. • 마감일자 : 2017. 12. 11.
- 새로운 형태인 일체형 전자감독장치 개발, 운용 예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위치추적 전자감독장치 정의 정비(안 제2조)
 - 1) 휴대용 추적장치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로 개정함.
 - 2) 재택감독장치는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로 개정함.
 - 3) 부착장치는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거나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로 개정함.
- 나. 부착명령 집행 방법 정비(안 제7조)
 - 1) 필요에 따라 기존 전자장치와 새로운 형태의 장치 중 하나를 택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방법을 개정함.
 - 2) 휴대용 추적장치는 “부착장치에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 교부하지 아니한다.” 는 단서를 추가함.

47.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10. 31. • 마감일자 : 2017. 12. 11.
- 현행 수형자 등 호송 규정은 호송 주체로 교도관과 경찰관만 규정하고 있으나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 호송·인치 업무 양해각서에 따라 2017. 1. 1.부터 검찰청 직원이 검찰 지명수배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을 호송·인치하고 있어, 호송 주체에 검찰청 직원을 추가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수형자 등 호송주체에 검찰청 직원을 추가하고 교도소를 교정시설

로 용어 개선(안 제2조)

- 1) 현행규정은 수형자 등 호송주체로 교도관과 경찰관만 규정하고 있어 검찰이 지명 수배한 피의자·피고인 등을 검찰청 직원이 호송하고 있는 실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호송 주체에 검찰청 직원을 추가하여 호송 실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2) 교도소를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로 변경하고 이를 교정시설로 약칭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용어와 통일되도록 함

나. 교정시설로 용어 변경함에 따라 문구 개선(안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교도소를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로 변경하고 이를 교정시설로 약칭함에 따라 현행 규정의 교도소를 교정시설로 변경함

48.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0. 31. • 마감일자 : 2017. 12. 11.

- 지자체의 전략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직주근접이 가능한 맞춤형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국민 주거복지 강화하고자 함

○ 가.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신설

지자체 전략산업 육성 및 종사자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지역전략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행복주택 등에 입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직주근접이 가능한 맞춤형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나. 창업지원주택 등 철거주택 소유자에 우선 공급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사업부지 내 철거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희망 시우선 공급이 가능하도록 함

다. 병역복무로 퇴거 시 재청약 가능

병역복무를 사유로 행복주택 퇴거 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모두 병역복무 후 재청약이 가능하도록 함

49.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안) (법제처)

- 예고일자 : 2017. 11. 1. • 마감일자 : 2017. 12. 11.
- 공정한 사회, 실패한 사람에게는 재기의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신분·자격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형선고의 효력이 실효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결격기간을 한정하는 한편, 법인 임원의 일부 결격사유 발생으로 법인의 등록 등을 취소하려는 경우 유예기간을 도입하고,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나 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허가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64개의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50.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1. 1. • 마감일자 : 2017. 12. 11.
- 화물차 심야할인이 ‘17.12.31 종료 예정이나, 영세 화물업계 지원 등을 위하여 이를 1년 연장하고자 함.

5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조정실)

- 예고일자 : 2017. 11. 1. • 마감일자 : 2017. 11. 21.
-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규제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규제의 원칙으로 명문화하고, 현행법상 벌금에 관한 사항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규제 정비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하고자 함

○ 가. 법 적용범위 정비(안 제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현행법상 벌금에 관한 사항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과징금과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어,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의 예외로 규정함.

나. 규제의 원칙 정비(안 제5조제4항 신설)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규제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명문화함.

다. 규제 등록제도 보완(안 제6조제3항)

제도와 행정 현실의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해 등록된 규제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등록제도를 보완함.

라.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시 심사 도입(안 제2장의2 신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함.

마. 규제 정비 요청 처리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7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답변, 규제개혁위원회의 소명 요청 또는 규제 개선 권고 등 절차적 근거를 마련함.

바.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34조의2 신설)

규제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5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7. 11. 1.
- 마감일자 : 2017. 11. 21.

-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전자문서가 기업의 창조적 경영활동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음을 규정하면서도 별표에 열거된 법률에 따른 기록 보고 보관 비치 작성 등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법률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적용범위가 불분명하였음. 또한 전자문서가 어떤 요건을 충족할 때 서면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종이문서를 대신하여 전자문서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자문서의 일반적 유효성을 규정하고 전자문서의 서면성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요건 및 효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전자문서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5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11. 2. • 마감일자 : 2017. 12. 12.
-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회수대상 화장품(이하 “위해화장품”이라 한다)의 위해성 등급 및 기준을 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화장품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의 회수의무 미이행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의 회수명령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 간 운영상 미비점 보완·개선을 통한 행정 실효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5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1. 2. • 마감일자 : 2017. 12. 12.
- 2018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017년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으로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함

5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11. 2. • 마감일자 : 2017. 12. 12.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바, 관세 경감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유리관 등 53개 품목을 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일진공관을 관세경감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5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11. 2. • 마감일자 : 2017. 12. 12.
-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재 관세감면 대상이 되는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 중 항온습기 등 25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압펌프 등 14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관세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 면세한도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한도가 현재 총량 50kg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총량 40kg으로 축소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작성안내 문안에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신고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57.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11. 2. • 마감일자 : 2017. 12. 12.
- 가. 현재 군인 중 부사관의 학력이 가장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소방, 군무원 등과 같은 학위취득자에 대한 우대제도가 없어 부사관의 군사전문성 향상, 자기개발,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 및 진급 심사 시 직무관련 학위 및 학점 취득자에게 가점

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추가하려는 것임.

나. 또한, 우대제도(가점 부여) 마련 시 격오지 경력 등에 대한 가점제도와 격오지 근무기간 중 취득한 학점 및 자격증에 대하여 추가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함께 신설하여 장기복무선발 및 진급 심사시 야전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부사관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 부사관 장기복무지원자에 대하여 학위 및 학점, 격오지 경력, 자격증 등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제3조의2)

나. 부사관 진급심사대상자에 대하여 학위 및 학점, 격오지 경력, 자격증 등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제26조의2)

5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11. 2. • 마감일자 : 2017. 12. 12.

○ 외교·국제고와 자사고의 입학시기를 후기로 이동하여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동등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우수학생 선점효과 및 고교서열화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임

○ 가. 외교·국제고, 자사고의 선발시기 변경(안 제80조)

- 전기학교 목록에서 외교·국제고, 자사고를 제외함

나. 전형방식, 입학전형실시권자 등 유지(안 제77조제2항, 제81조제5항, 제82조제7항, 제84조제3항)

-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외교·국제고, 자사고 등이 후기모집으로 이동하더라도 기존의 전형방식, 입학전형실시권자, 지원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

다. 추가선발 및 배정 구체화(안 제86조)

- 전기 또는 후기 학교의 합격자는 추가선발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학교장이 입학전형 실시하는 학교가 추가 선발할 수 있도록 함

5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11. 3. • 마감일자 : 2017. 12. 13.

○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안 별표 1)

붉은어깨도요, 큰줄납자루 등 25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 신규 지정하고, 작은관코박쥐와 호사비오리 등 11종에 대한 목록내 등급을 조정하며, 미선나무와 큰수리팔랑나비 등 4종을 목록에서 해제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지정 종수를 현행 246종에서 267종으로 변경함
나.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기간 조정(안 제31조의3제3항)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현재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기간을 4월부터 11월까지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60.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 예고일자 : 2017. 11. 3. • 마감일자 : 2017. 12. 13.

○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병역의무자 등의 해외이주 결격사유 규정 신설 예정에 따라 관련 규정 폐지, 거주여권 관련 조항 삭제·개정, 해외이주신고 제출서류 관련 규정 재정비 및 해외이주알선업체의 휴업 및 폐업 신고수리 통보 조항 신설로 규제 합리화를 도모함.

6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1. 3. • 마감일자 : 2017. 12. 13.

○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이용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개정하고자 함
○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을 외래방문하거나 약국 방문시 본인부담 경감(별표3 제1호, 별표4)

6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11. 3. • 마감일자 : 2017. 11. 15.

○ 「2012년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

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 의 부록 2(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부록 4(역외가공 인정 품목 목록) 개정」(조약 제2365호)가 2017. 12. 1.자로 발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별표 3”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HS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07 기준에서 HS 2012 기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63.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11. 3. • 마감일자 : 2017. 12. 13.

○ 가.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 「군인사법」 및 「군인사법시행령」 개정(' 15. 9.23.) 이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시행 중임.

나. 전공상자 분류기준은 세분화 되어있지 않아 심사시 심사위원들의 심사기준이 불명확하고, 보호자의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에 대비하여 사망분류기준과 같이 세분화 필요성이 대두됨.

다. 장기 미인수영현을 포함하여 약 600여명으로 추산되는 순직심사요구를 신속하게 심사하기 위해 위원 pool의 확대가 필요함.

라. 「군인사법시행령」으로도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에 대한 순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이 없어 유족들이 중앙전공사상심사 청구를 주저하고 있으며, 심사위원들도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이 반영된다면 심사시 사망구분을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임.

※ 「군인사법시행령」 별표 8 순직 I II III형의 비고란에 반영

마. 또한, 순직자 분류기준표에 질병에 대한 부분은 ‘입대 후 질병이 발병 악화되었을 시 ‘를 반영하여 당사자와 유가족의 권리구제 등이 보장 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함.

6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11. 3. • 마감일자 : 2017. 12. 13.
- 국민권익위원회 소위원회의 업무 분장사항에 검찰 처분·수사에 관한 고충민원 처리 기능을 추가하여 검찰분야에 대한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적정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6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11. 3. • 마감일자 : 2017. 12. 13.
-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의견 수렴 범위를 학생·학부모가 알아야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 심의사항으로 확대(안 제59조의4)
 - 학부모의 의견수렴 범위를 ‘학부모 경비부담 사항’에서 학칙의 제·개정, 학교급식 등으로 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
 - 학생 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제시가 가능한 사항을 학칙 제·개정 등으로 구체화